

1.

우리의 主張

電氣保安担当者는

왜 必要한가!!

法定義務 雇傭制度 改善에 關하여

Our Opinion:
Necessity of Electrical
Chief Engineer System

李 龍 熙

本協會 理事·事務局長

지난 5月8日자로 都下 各新聞은 商工部 發表로 中小企業의 費用負擔 過重과 企業의 自律性 沮害라는 側面에서 防火·熱管理·電氣保安 担当等 10個職種에 대한 法定義務 雇傭制度를 대폭 縮少 改善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政策의 根本的인 趣旨에 대해서는 一理가 있는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그러나 發表된 內容中 部分的으로는 根本的인 趣旨에 合當치 않은點이 있음은 勿論 오히려 産業發展의 沮害要因이 될 수 있는 重大한 施行錯誤를 惹起시킬 部分이 없지 않아 이에 우리 主張을 밝히고자 한다.

即 오늘날 文明社會에서 暫時라도 없어서는 안될 가장 貴重한 것 중의 하나가 電氣라고 본다. 電氣는 便利하면서도 危險하다는 것은 三尺童子라도 알고 있는 事實이다. 또한 우리 家庭生活에서 부터 國家産業에 이르기 까지 電氣의 役割은 絶對的이라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예로 우리들 家庭에서 暫時 停電이 되었을 때의 答답함을 생각해 보자! 더욱이나 집안에서 電氣器具等を 使用하다가 잘못되어 퓨우즈가 끊어졌다고 假想할 때 家族중에서 그 原因을 即刻 發見하고 除去하는 同時에 適正容量의 퓨우즈로 갈아 끼울 수 있는 能力者가 있었다면 別問題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할 境遇, 韓電이나 或은 他人에게 부탁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어설픈 電氣를 안다고 해서 過容量 퓨우즈(甚至於 철사나 銅線) 등으로 措處했을 때, 그 後에 오는 危險性 即 屋內配線의 過熱로 因한 火災 또는 電柱에 있는 變壓器 燒損事故 誘發等 우리 周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 들이 發生한다.

그러나 電氣가 하룻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程度의 家庭이라면 모든 것을 拋棄하고 일찍부터 잠자리에 누워 버리고 그 다음날 處理해도 別問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生産工場은 아니지만 揚水 또는 上水道等 市民을 爲해서 繼續 모우터를 돌려야 한다

든가 또한 製品을 生産하는 工場等에서 停電 또는 事故가 일어났을 때 施設의 大小를 莫論하고 一般家庭과 같은 安易한 事故處理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果然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産業체가 이 競爭社會에서 殘存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 結果는 疑問의 余地조차 없는 일이다.

어느 工場主이건 工場內 機械의 無事故 稼動을 願하고 있다. 特히 生産의 原動力인 電力供給의 繼續性은 必要不可缺한 絶對的인 要素가 되는 것이다.

工場 構內에 局限되는 瞬間的인 停電 事故가 發生했을 때 迅速한 復舊가 없는 限 製品의 量과 質 面에서 많은 損失을 招來함은 勿論이려니와 萬一 當該工場內의 電氣保安이 疎忽했을 境遇 構內事故가 韓電線路 系統에 까지 波及되어 關係變電所가 停電됨으로써 該當變電所에서 電力을 供給받고 있는 모든 工場과 一般 需用家は 뜻하지 않은 停電騷動을 겪어야만 하는 事例가 있으며 特히 集團工場 地域(表 1 參照)의 경우는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듣고 있다.

〈表- 1〉 工團地域 停電事故 原因別 現況

(1981年度)			
區分	事故件數	比率(%)	備 考
自家用業체構內 事故波及	130	30	韓電系統波及
韓電施設事故	114	26	
公害 및 外物接觸等	197	44	
合 計	441	100	

※ 瞬間停電은 除外

뿐만 아니라 이러한 事故의 規模가 보다 클 경우에는 關係 發電所에 까지 波及되어 廣域한 地域이 순식간에 暗黑天地가 된다.

이같은 事實들을 分析해 볼 때 機械的인 事故의 경우는 部分的인 事故로서 處理가 容易하나 電氣的인 事故는 事故의 大小를 不問하고 當該 工場의 平常時 電氣保安管理 狀態 如何에 따라 自己工場은 勿論 다른 隣近 工場에 까지 重大한 事態를 誘發케 하고 있는 事實을 우리는 잘 認

知하고 있다.

따라서 電氣設備가 있는 工場 또는 大型建物 등에는 이러한 事例에 對備, 円滑한 運用을 爲하여 規模에 따라 差異는 있겠으나 電氣技術者들이 몇名式 그 任務에 從事케 하고 있다.

電氣保安担当者라 함은 國家資格法에 依한 電氣技師資格 取得者 中에서 理論과 實務에 能한 優秀한 電氣技師를 企業主들이 任意로 選任, 關係機關에 申告된 者인데 이들은 電氣事業體 및 自家用 業체의 電氣工作物에 對한 工事維持 및 運用의 保安을 監督하는 總責任을 지고 있다.

그리고 電氣의 安全管理 側面에서 電氣 火災(表 2) 및 感電事故(表 3) 豫防을 비롯해서 電氣의 合理的인 使用과 特히 電氣設備의 事故豫防 및 效率的인 運用을 爲해서 當該 工場內의 電氣設備 保安을 統括하는 한편 事業場內의 一般 電氣技術者 및 技能工들에 대한 現場技術의 指導와 工場內의 電氣에 關한 모든 事故를 豫防함으로써 繼續 機械가 稼動할 수 있도록 하는 重要 任務를 지니고 있다.

또한 對內外的으로 電氣保安 監督에 對한 一切의 責任을 지기도 한다.

〈表- 2〉 電氣火災事故 現況

區分	分類別	1977	1978	1979	1980
總 件 數		5,363	5,648	5,711	5,438
電氣火災件數		1,159	1,306	1,356	1,402
占有率 (%)		21.6	23.1	23.7	25.8
死 亡 者 數		58	162	142	112
死 傷 者 數		295	378	346	339

〈表- 3〉 感電死傷事故 現況

年度別 區分	1977	1978	1979	1980
死 亡	15	24	23	48
負 傷	55	107	70	85
計	70	131	93	133

〈表-4〉 最近의 大型電氣火災 事故

事故場所	年月	原因	人命被害
서울市民會館	72. 12	過熱	127 (51)
南山觀光호텔	74. 10	合線	63 (19)
서울大學病院	79. 3	變電所事故	
光州거북장	80. 6	過負荷	25 (23)

※ ()는 死亡者

電氣産業이 最高度로 發展되고 있는 日本에서도 亦是 日本 電氣事業法(第72條) 의거 電氣保安担当者 法定義務 雇傭制度를 1911年度부터 採擇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32年度부터 日帝下의 朝鮮電氣事業令으로 出發 現在에 이르기까지 50餘年間 繼續 施行이 되어 왔다. 現行 우리나라 電氣保安 担当者 法定義務 選任(第40條 및 第49條) 및 保安代行制度(表5)는 日本의 境遇와 同一하다.

即 自家用 電氣設備 容量으로서 500kW 以上인 境遇에 限해서 企業主는 電氣保安担当者를 義務의으로 選任하여 常駐하도록 하고 있으며 500kW 未滿은 작은 規模의 電氣設備로 看做하여 電氣安全公社等과 保安契約을 맺고 1個月에 1回程度 施設을 保安點檢 하도록 電氣事業法上 配慮가 되고 있다.

前記 諸統計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産業의 發展度에 따라 諸般 電氣事故는 해마다 增加一路에 있다.

〈表-5〉 自家用 電氣設備企業체 現況

容量別 區分	50~500 kW 未滿 (保安代行)	500 kW 以上 (義務選任)	計
企業체數(戶)	22,692	3,261	25,953
比率(%)	87.4	12.6	100

※ 法定義務選任 全企業체의 12.6%

施設規模의 大小를 莫論하고 特히 輸出業체에서는 말할 余地가 없겠으나 其他 生産業체에서도 製品의 計劃生産에 蹉跌을 招來하지나 않

을까 念慮하여 自体電氣事故 豫防 및 保安業務에 보다더 徹底를 期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政府나 國會에서는 이를 重視하고 81年度末에 專門家들의 意見을 集約하여 電氣事業法을 改正하고 保安担当者들에 대한 資質 向上을 爲하여 從前에 없었던 法定教育을 強化하고 電氣的 大小事故 豫防은 勿論 日進月步하는 新技術 習得에 最善을 다하여 電氣産業 發展에 이바지하도록 不過 몇個月前(1981年 12月 31日 改正公布)에 措置한 바 있었다.

그리고 施行令 또한 82. 4. 14에 公布했다. 그러나 施行도 하기前에 이 法趣旨를 急變하여 中小企業체의 勞賃負擔 輕減의 一環策으로서 電氣事業法 第49條(自家用 電氣工作物 設置者の 保安担当者 選任)를 削除하고 電氣設備業체의 電氣保安을 企業체 任意로 한다는 이른바 保安의 自律化方案 또는 勤勞者安全을 爲主로 하고 있는 勞働法 및 産業安全保健法에 依한 安全管理者에게 自家用 電氣設備에 對한 電氣保安 担当者의 任務 即 電氣工作物の 工事維持 및 運用에 關한 保安의 監督業務를 吸收하도록 하는 方案等 우리들의 一般的인 常識으로는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至極히 危險한 政策이 新聞紙上에 報道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報道內容 自体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期待를 가지면서 萬一의 境遇를 爲하여 政府側 關係官에게 다음과 같은 公開 呼訴를 하고자 한다.

即 電氣事業法 第49條에 依한 自家用 電氣工作物 設置者の 保安擔當者라 함은 前述한 바와 같이

첫째 自家用 電氣工作物の 工事維持 및 運用에 關한 保安의 監督에 對한 責任을 擔當하고 있으므로 當該 産業체의 構内事故 豫防과 또한 事故時 迅速한 復舊等 工場稼動에 있어서의 沮害要因을 繼續點檢 探知하여 事前에 除去토록 함으로써 自体 生産性 提高는 勿論 品質向上과 에너지節減活動에 까지도 寄與하고 있는 者이다.

뿐만 아니라 自体施設의 保安管理를 常時 徹

底히 함으로써 不意의 事故가 發生하였을 境遇라 할지라도 自体構內 事故로 最少限 局限시킴으로써 韓電系統 事故 波及을 事前에 豫防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電氣安全管理面에서 불 때 人命保護를 爲한 感電事故의 豫防은 勿論 財産保護를 爲한 電氣火災事故 豫防等 莫重한 責任도 또한 賦與받고 있으므로 이들은 事故 發生時에는 企業主를 代身하여 一次的인 責任을 免치 못하도록 되어 있다.

然이나 保安擔當者의 能力과 活動여하에 따라 當該工場의 電氣的 事故로 因한 操業 中斷時 惹起되는 工場從業員들의 遊休로 因한 損失, 原資材의 損失, 生産性 및 品質低下로 因한 損失等 保安擔當者 1人當의 年間 給與의 數10倍 乃至 數100倍의 損失이 一時에 發生될 수 있다는 것을 當局과 企業主들은 分析해 본 적이 있는지? 保安擔當者 選任制度가 法的으로 義務化되어 있는 現 狀態에서도 企業主 自身들이 電氣保安에 對한 思考方式이 疎忽함은 勿論 甚至於는 全然 無關心한 狀態인 企業主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保安擔當者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한번의 停電事故로 因한 企業損失의 分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中小企業들이 얼마나 많은가?

經濟大國으로 發展한 日本에서는 電氣保安擔當者의 法定義務 雇傭制度를 70余年間이나 계속 維持發

展시켜 오고 있는 事實을 關係當局은 直視해 주기 바라는 다음 懇切하다.

參考로 나는 지난해 日本의 日立製作所를 訪問했을 때 그곳 工場責任者에게 年間 停電回數가 몇회가 되는가 質問한 적이 있었다. 그 責任者는 答하기를 “停電이 몇회나구요? 停電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工場은 亡하지요” 하면서 關係 電氣 技術人들은 勿論 特히 우리 保安擔當者(日本에서는 主任技術者라 稱함)의 努力으로 1년에 한두번 程度로 그것도 “瞬間停電”程度라는 것이었다.

오늘날 日本의 産業發展이 바로 이러한 點에 發祥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本人은 앞에서 말했듯이 産業의 原動力인 電力供給의 中斷이 자주 일어났을 때 産業發展에 얼마나 많은 影響을 미치게 하고 있는지를 關係當局이나 企業體에서는 한번 쯤은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顯컨대, 中小企業의 育成發展을 圖謀하기 爲해서 月幾萬圓의 保安擔當者의 手當이나 幾拾萬圓의 勞任負擔을 節減토록 하는 것도 經濟面에서 불 때 一理는 있겠으나 産業發展에 根本的으로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으며 또 貢獻하고 있는 50年 歷史와 傳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電氣保安擔當者의 現制度는 國家的인 次元에서 불 때 계속 維持發展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이 紙面을 通하여 다시 한번 強調하면서 關係當局에 이를 建議하는 바이다.

—〈11p에서 계속〉—

이룩되는 것이다.

얼어죽는 한달鳥

히말라야山에 사는 種族들의 傳承中에는 「한달」이라는 觀念上的 새가 있다고 한다. 이 새는 히말라야山 꼭대기 바위틈에 棲息하는데 밤이 되면 추위에 못견디어 「내일 해가 뜨면 동지를 틀어자야」하고 궁리를 하지만, 낮에 햇빛으로 따듯해지면 「이만하면 살만 한데 동지가 무슨 소용인가」 하고 하루해를 보낸다고 한다. 이

새는 이렇게 해서 결국 얼어 죽는다고 傳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大型事故가 나고 주위가 시끄러우면 事前對策이 없었음을 한탄하고 專門家를 찾으며 허둥대지만 일단 그 고비가 넘어가고 난 후에는 망각의 世界에서 살아가는 作態라면 무슨 先進이고 科學이고 부르짖을 資格들이 있겠는가?

생각컨대 今般 거론되는 「電氣保安担当者制度」에 關한 對處도 좀더 깊은 研究와 對備하는 姿勢에서 결말지어 지기를 期待할 뿐이다.

날이 따듯하니 동지를 없애자고 한다면, 결국 「한달」새 모양으로 얼어죽는 날이 올 것이다.